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20진정0855100 산재치료중인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

피진정인 ○○출입국·외국인청장

주 문

1. ○○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 보호일시해제 관련 업무처리 시 법적근거 없는 각서 등의 징구 행위를 중단하고, 외국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포함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기를 권고합니다.
2. 진정요지 가항, 나항, 다항 및 마항은 각 기각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우즈베키스탄계 ○○○○○○ 국적의 외국인이며, 2014. 11. 13. 수출입 관련 업무로 한국에 입국했고, 현재는 미등록으로 체류하고 있다.

진정인은 2020. 8. 10.부터 ○○○○ ○○군 소재 우즈베키스탄 음식점에

서 요리사로 근무하던 중, 같은 달 14. 주방에서 미끄러져 부상을 입고, ○
 ○군 소재 병원에서 “우측 수부 5중수골 골절 및 부정유합으로 6주간 치료
 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진정인은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었지만 음식점 사장에게 우즈베키스탄
 요리 방법을 알려주며 지내던 중, 2020. 8. 26. 13:10경 ○○지방경찰청 및
 ○○출입국·외국인청(이하 ‘피진정기관’이라고 한다) 소속 직원 4~5명에 의
 해 체포되었고, 그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가. 진정인의 상처부위를 덧나게 하고, 덧난 상처 치료 방해

진정인은 체포 당시 “손가락을 다쳐서 너무 아프다”라고 호소했으나,
 피진정기관 소속 직원은 이를 무시하고 양손에 수갑을 채웠으며, 그 과정에
 서 부상당한 부위를 세게 잡아 상처가 덧나 손이 퉁퉁 부었다.

진정인은 체포된 다음날인 2020. 8. 27. 외부진료를 받았는데, 진정인을
 진료한 의사는 진정인에게 수술을 권하였으나 피진정기관 소속 직원은 “곧
 강제퇴거 될 사람이므로 자기 나라에 가서 수술 받으면 된다”며 수술을 받
 지 못하게 했다.

나. 진정인의 산재심사 및 승인 방해

피진정기관 소속 직원은 진정인의 산재신청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진정인의 경찰조사 내용을 전달하며, “산재심사를 엄격히 하라”
 고 하여, 산재심사를 방해했다. 산재심사는 근로복지공단의 고유한 영역인
 데 이에 영향을 미치려 했고, 산재처리와 관계없는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다. 진정인의 보호일시해제 신청 거부

피진정기관 소속 직원은 산재처리가 결정된 외국인의 경우 ‘보호 중이라도 그 보호를 해제하고 산재처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라’는 출입국 지침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에게 “출국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하면서, 진정인의 정당한 보호일시해제 신청을 거부했다.

라. 출국 항공권 구매 및 각서 작성·제출 강요

진정인은 2020. 10. 30. 보호일시해제 연장 신청을 위해 피진정기관에 방문했는데, 피진정기관 소속 직원은 “끝까지 이런 짓을 한다”고 하면서 가장 빠른 출국 항공권을 당장 구매해야 출국 연장을 해주겠다고 하여, 진정인은 현장에서 항공편을 즉시 구매하고 확인 받았으며, 해당 직원은 항공편의 출발일(2020. 11. 16.)에 출국하지 않으면 보호일시해제가 취소되고, 이와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라는 내용의 각서를 강요하였다.

마. 확정되지 않은 혐의 유출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당할 수 있는 어려움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진정인의 동의 없이 진정인의 체포사실과 출국예상 내용을 본국에 알려주었다. 특히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IS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하여, 본국에 관련 질문들을 하였고, 이 때문에 본국의 경찰관들이 진정인의 어머니를 조사하는 등 어려움을 당했다. 진정인은 산재처리 이후 본국에 돌아가야 하는 상황인데, IS 가담 여부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 관련

진정인이 2020. 8. 26. 우리 청 이민특수조사대 단속반에 검거될 당시, 단속반은 진정인에게 미란다원칙 고지 후, 장기 불법체류자로서 도주할 우려가 있어 도주방지 및 안전 확보를 위해 보호장비인 수갑을 채워 「출입국관리법」 제51조(보호) 제3항에 따라 긴급 보호하였다.

당시 진정인은 손이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았으며, 단속반원은 진정인의 다친 부위를 세계 잡고 수갑을 채운 사실도 없다. 진정인은 단속차량으로 이동한 후에 손을 다쳐 아프다고 했고, 이에 필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느슨하게 수갑을 풀어 통증이 없도록 조치한 사실이 있다.

우리 청은 긴급보호 다음 날인 2020. 8. 27. ○○○○시 ○○구 ○○대로 소재 ○○○○병원에서 진정인의 다친 손을 치료받게 하였다. 진정인의 주장대로 의사에게 ‘곧 강제퇴거 될 사람이므로 자기 나라에 가서 수술 받으면 된다’고 말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손가락 골절 수술 등 치료 목적 등 인권보호 차원에서 같은 해 9. 8. 진정인의 보호일시해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2) 진정요지 나항 관련

진정인에 대한 보호일시해제 기간 부여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진정인의 산재 처리절차 및 소요 예정기간에 대해 우선으로 문의한 사실은 있으나, 진정인의 주장처럼 근로복지공단에 엄격한 심사를 요구

한 사실은 없으며 관여할 권한도 없다.

진정인에 대한 산재 승인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이 판단할 고유 업무이며, 또한 우리 청은 산재 처리와 관계없는 진정인에 대한 정보를 근로복지공단에 통보한 바 없다.

3) 진정요지 다항 관련

우리 청은 2020. 8. 28. 진정인에게 장기 불법체류 등을 사유로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제1항 제3호 및 제4호, 같은 법 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제1항, 같은 법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제1항 제3호 및 제8호, 같은 법 제51조(보호)에 의거,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을 한 바 있다.

진정인은 2020. 9. 4. ①○○○○○○○ 국적 배우자와 자녀 3명(2017년생, 2018년생, 2020년생)이 국내 체류 중으로 출국을 위한 준비기간 필요, ②손가락 골절 수술 및 치료 필요, ③운영 중인 식당(3곳) 정리 및 채권채무관계 해결 등의 사유로 보호일시해제를 청구하여, 우리 청은 같은 달 8. 위 청구 사유를 고려하여 인도적 견지에서 진정인의 요청대로 보호일시해제기간 1개월(2020. 10. 7.까지), 보증금 2,000만원을 조건으로, 청구 사유를 해결하고 스스로 출국할 수 있도록 보호일시해제를 허가하였다.

이후 진정인은 손가락 수술로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보호일시해제기간 연장을 청구하여, 치료를 마치고 출국하는 조건으로 2020. 10. 30.까지 연장 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진정인은 2020. 10. 26. 기존의 부상부위에 대해 산재를 신청 (사유: 2020. 8. 14. 일당을 받기로 하고 고용된 식당의 주방에서 일하다 손가락이 골절되었다며 산재 신청)했고, 이에 우리청은 산재보상 완료 시까지 진정인의 보호일시해제기간을 연장했으며, 진정인은 산재요양기간이 끝나자 장애급역을 청구했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장애등급이 일반 14급 06호로 결정되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청은 진정인의 보호일시해제기간을 2021. 2. 15.까지 재연장 허가한 상태이다.

4) 진정요지 라항 관련

진정인은 강제퇴거 대상자이나 인도적 견지에서 보호일시해제를 허가하였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은 만료일이 임박해서야 수술을 받는 등 보호일시해제 사유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과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최초 진정인이 서약한 대로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신고 및 직권 보호일시해제 업무처리 시 징구하는 각서(서약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이는 진정인에 대해서만 특별히 적용되는 사항은 아니다.

처분청은 보호일시해제 업무에 있어 「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법무부 훈령 1303호) 제20조(기간연장 심사결정) 제2항 규정에 따라, 보호일시해제 연장 시에는 일시해제 사유의 해소 노력과 그 결과 등을 판단하여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진정인은 1차 연장기간 만료일이 임박해서야 진료를 받는 등 보호일시해제 사유 해소를 위한 노력이 미흡하여 연장을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었으나, 진정인에게 각서(서약서)를 징구하고 연장 허가를 하였으며, 이는 규정에 위반된 사항이 아니며 보호일시해제 사유가 해소되면 출국한다는

제도 본연의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은 이후 진정인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승인을 받음에 따라, 인도적 견지에서 보호일시해제기간 연장을 허가했으며 진정인의 주장처럼 위압적 표현을 사용한 바 없다.

5) 진정요지 마항 관련

우리 청은 「출입국관리법」 등에 근거하여 출입국행정을 수행하는 곳으로, 진정인의 IS 가담 여부 등을 본국에 알려줄 이유가 없으며, 진정인의 체포 사실과 출국 날짜 등을 진정인의 본국에 알려준 사실이 없고, 이는 우리 청의 업무와도 무관한 사항이다.

이외에도 진정인은 산재보상 절차가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2021. 1. 12.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등의 사유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며, 이는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당사자들의 주장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4. 11. 13. 단기방문(C-3-4)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인 같은 해 12. 13.까지 출국하지 않고 현재까지 미등록 상태로 체류

중인 외국인이다.

나. 피진정기관 소속 직원은 2020. 8. 26. 13:05 ○○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진정인을 「출입국관리법」 위반(미등록 체류 등)으로 ○○○○ ○○군 덕산읍 노상에서 적발, 보호장비인 수갑을 채워 「출입국관리법」 제51조(보호) 제3항에 근거하여 긴급보호 조치하였다.

다. 피진정기관 소속 직원은 2020. 8. 27. ○○○○시 ○○구 소재 ○○○○병원에서 진정인의 다친 손을 치료받게 하였다.

라. 피진정인은 2020. 8. 28. 진정인의 미등록 체류 등을 사유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을 하였다.

마. 진정인은 2020. 9. 4. 국내체류 중인 ○○○○○○ 국적 배우자와 자녀 3명과 함께 출국을 위한 준비기간 필요 등을 사유로 보호일시해제를 청구했고, 피진정인은 같은 달 8. 진정인의 보호일시해제 청구를 승인하였다.

바. 진정인은 2020. 9. 8. 보호일시해제 되었고, 같은 달 24. ○○○○ ○○시 소재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같은 해 10. 5. 같은 병원에 입원하여 2020. 10. 6. 우측 손가락 골절부위 수술을 받았다(입원기간 2020. 10. 5.~15. 2주, 통원기간 2020. 10. 16.~12. 10. 8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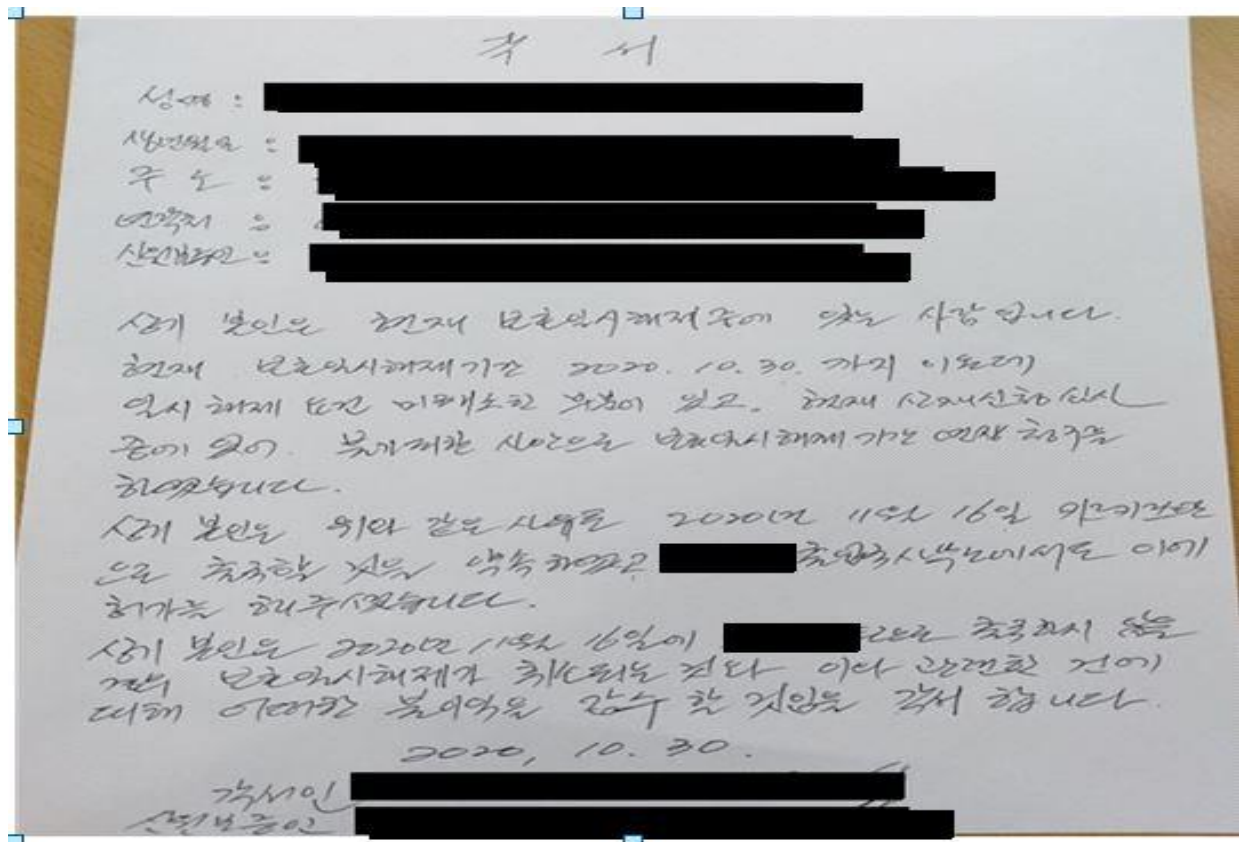
사. 진정인은 2020. 10. 26. 손가락 골절은 진정인이 고용된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산업재해보상 신청을 하였다.

아. 진정인은 2020. 10. 30. 피진정인에게 산업재해보상 신청을 사유로 일시보호해제기간 연장 신청을 하였다.

자. 피진정기관 소속 직원은 진정인에게 보호일시해제 기간 연장의 조건으로 진정인이 본국으로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항공권 구매와 자진출국 각서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하였고, 진정인은 현장에서 2020. 11. 16. 출국하는 항공편을 구매하고 피진정기관 소속 직원에게 확인 받았으며, 피진정기관 소속 직원이 불러주는 대로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진정인은 피진정기관 소속 직원과 언어소통이 잘 되지 않아, 피진정기관 소속 직원이 불러주는 내용을 진정인측 행정사가 받아쓰고, 동 행정사는 작성한 각서의 내용을 한국어 소통이 원활한 진정인의 아내에게 읽어줬으며, 진정인의 아내는 진정인에게 이를 통역해주는 방법으로 각서 작성을 마쳤다.

차. 진정인은 각서를 피진정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본국 출국 예정일인 2020. 11. 16.까지 보호일시해제기간을 연장하였다. 진정인이 제출한 각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카.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은 2020. 11. 13. 진정인의 산업재해보상 신청에 대해 같은 해 12. 10.까지의 요양기간과 보험급여 지급을 승인하였다.

타. 진정인은 2020. 12. 30. ○○○○병원에서 우측수부 제5지 골절에 따른 장애 진단을 받고, 같은 날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에게 장애급여를 청구하였다.

파. 진정인은 2020. 12. 31. 피진정인에게 장애급여 청구를 사유로 보호일시해제기간 연장 청구를 하였고,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보호일시해제 기간을 2021. 2. 15.까지 연장하였다.

하.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는 진정인의 장애급여 신청 등에 대한 결과가 2021. 4. 15. 결정됨을 진정인에게 통보했고, 진정인은 이를 근거로 피진정인에게 보호일시해제기간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피진정인은 보호일시해제기간을 같은 해 3. 15.까지만 연장하였다. 진정인은 같은 해 3. 15. 피진정인에게 같은 사유로 보호일시해제기간 재연장을 신청하여 같은 해 4. 15.까지 재연장 허가를 받았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상처부위 압박 및 의료조치 방해) 관련

진정인은 2020. 8. 26. 검거될 당시 피진정기관 소속 직원이 진정인의 부상 부위를 꼭 잡아 던지게 했다는 주장에 대해, 피진정인은 도주방지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수갑을 채웠으나, 단속차량으로 이동한 후에 진정인이 손을 다쳐 아프다고 하여 필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느슨하게 수갑을 풀어주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진정인의 부상당한 손가락에 대한 진료 목적으로 2020. 8. 27. 피진정기관 소속 직원과 함께 ○○○○시 ○○구 ○○대로 소재 병원을 방문하였고, 의사의 수술 및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에 대해 피진정기관 소속 직원이 “곧 강제퇴거 될 사람이므로 자기 나라에 가서 수술 받으면 된다”고 말하는 등 진정인의 부상 치료를 위한 의료조치를 방해했다는 주장에 대해, 피진정기관 소속 직원은 그렇게 말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손가락 골절 수술 등 치료 목적과 인권보호 차원에서 2020. 9. 8. 보호일시해제 조치를 취한 바 있다며 진정인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살펴보면, 진정내용에 대한 당사자 주장이 상반되는 가운데 진정내용의 구체적 행위나 발언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 및 증언을 확인할 수 없어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진정인의 산재심사 및 승인 방해) 관련

근로복지공단 ○○지사 담당자(이하 '참고인'이라 한다)에게 확인한 결과, 피진정기관 소속 직원이 진정인의 산재 처리절차 및 소요 예정 기간에 대하여 유선으로 문의한 것은 사실이나 진정인의 주장처럼 근로복지공단의 엄격한 심사를 요구한 적은 없고, 피진정기관 외에 ○○지방경찰청으로부터도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업무에 신중을 기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산재 승인 검토기준은 명확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승인 심사 등에 방해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참고인은 진정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이 3개라는 것을 알게 되어 근로자성 확인이 필요했으며, 진정인이 당한 재해가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발생하는 등 업무를 신중히 처리할 수밖에 없는 요건들이 존재하였고, 이러한 사실에 대해 진정인에게 안내하였으며, 검토 결과 진정인의 산재 신청은 승인되었다고 답변하였다.

따라서, 진정인의 산재 심사를 방해했다는 진정내용은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진정인의 보호일시해제 신청 거부)관련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보호일시해제 신청을 부당하게 승인하지 않았다고 불만한 정황은 없다. 따라서, 보호일시해제

신청을 부당하게 거부했다는 진정은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기각한다.

라. 진정요지 라항(출국 항공권 구매 및 각서작성·제출 강요) 관련

진정인은 2020. 10. 30. 보호일시해제기간 연장 신청을 위해 피진정기관을 방문하였을 당시, 피진정기관 소속 직원이 보호일시해제 연장과 관련하여 진정인에게 가장 빠른 출국 항공권을 즉시 구매할 것과 해당 일자에 출국하지 않으면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강요해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여 아래와 같이 살펴봤다.

1) 판단근거

「대한민국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서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도출되며, 일반적 행동자유권에는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은 물론 소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자유 즉, 부작위의 자유도 포함된다.

이러한 기본권도 「대한민국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될 수 있겠으나,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대한 제한에는 반드시 법률의 수권이 있거나, 그 목적을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제한이 이루어져야 한다.

2) 각서 등을 요구할 근거

진정인에게 보호일시해제기간 연장의 조건으로 항공권의 즉시 구매와 각서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한 피진정기관 소속 직원의 행위는 진정인에

게 일정한 행동을 할 것을 사실상 강요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이 설령 법무부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 할지라도 별도로 법률상의 구체적인 수권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출입국관리법」 제66조(보호 일시해제의 취소)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일시해제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 사건에서와 같은 각서 등의 제출 요구가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위임의 내용은 존재하지 않으며, 심지어 같은 법 시행령이나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도 그에 관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각서 제출 요구에 관한 법률상의 근거나 명시적인 위임의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3) 항공권 구매 및 각서 작성·제출 요구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

보호일시 해제기간 연장의 조건으로 각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는 미등록 체류 외국인의 자진출국을 유도하고 보호일시해제기간의 연장을 남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이 출입국관리와 관련한 질서유지의 측면에서 정당화 될 수 있을 것이며, 각서 제출을 조건부로 하여 보호일시해제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개인의 인격 발현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기본권이므로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의 한도에 그쳐야 한다.

그런데, 본 사건에서 피진정기관 소속 직원이 보호일시해제 연장신청

을 하러 피진정기관을 방문한 진정인에게 현장에서 항공권 구매를 강요하고, 이후 각서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하면서 2020. 11. 16.까지 출국하지 않을 경우, 보호일시해제가 취소되고, 이와 관련한 건에 대해 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보호일시해제의 취소는 물론 그에 대한 어떤 권리구제도 포기하겠다는 뜻까지 포함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데, 각서의 내용이 진정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고, 피진정기관 소속 직원이 불러준 내용을 받아 적은 것임을 감안할 때, 해당 각서의 작성 및 제출 요구는 권리구제의 기회 포기 등을 포함한 모든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사실상 강요한다는 점에서 진정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필요 이상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4) 소결

따라서 피진정기관 소속 직원이 보호일시해제기간 연장 청구를 하기 위하여 피진정기관을 방문한 진정인에게 보호일시해제기간 연장의 조건으로 항공권 구매 및 각서 작성·제출을 요구한 것은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진정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피진정인에게, 보호일시해제 관련 업무처리 시 법적근거 없는 각서 등의 징구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외국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포함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라. 진정요지 마항(확정되지 않은 혐의 유출) 관련

피진정기관 소속 직원은 「출입국관리법」 등에 근거하여 출입국행정을 수행하는 출입국관리 공무원으로, 체류 외국인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된다면 기초조사 등의 업무는 수행할 수 있겠으나, 정황이 인지된다면 사안의 특성상 국정원 등 대테러 대응기관에 이관하기 때문에 피진정기관 소속 직원이 위 사안을 진정인의 본국에 알려 줬을 개연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진정인이 IS 가담 여부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은 피진정기관 소속 직원 뿐만 아니라 ○○지방경찰청 소속 공무원들도 인지하고 있었는데, 진정인의 주장대로 누군가 진정인이 IS 가담 여부로 대한민국정부의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진정인의 본국에 발설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설한 당사자가 피진정기관 소속 직원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 피진정기관 소속 직원도 진정인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으며, 진정인의 주장을 증명할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확정되지 않은 혐의를 유출했다는 진정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 나항, 다항 및 마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 2와 같이 각 결정하고, 진정요지 라항은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 1과 같이 결정한다.

2021. 5. 12.

위 원 장 이 상 철

위 원 문 순 회

위 원 윤 석 희

<별지 2>

관련 규정

1.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1. 제7조를 위반한 사람
2. 제7조의2를 위반한 외국인 또는 같은 조에 규정된 허위초청 등의 행위로 입국한 외국인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
4. 제12조제1항·제2항 또는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
5.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6. 제14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사람
7. 제14조제3항(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또는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8.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5조를 위반한 사람
9. 제21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처를 변경·추가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고용·알선한 사람

10. 제22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정한 거소 또는 활동범위의 제한이나 그 밖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
 - 10의2. 제26조를 위반한 외국인
 11.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출국하려고 한 사람
 12.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의무를 위반한 사람
 - 12의2. 제33조의3을 위반한 외국인
 1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2, 제11호, 제12호, 제12호의2 또는 제13호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②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또는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
 2.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3. 제12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거나 이를 교사(敎唆) 또는 방조(幫助)한 사람

제47조(조사)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의심되는 외국인(이하 “용의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제51조(보호)

-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으

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8.>

- ② 제1항에 따른 보호명령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을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긴급히 보호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8.>
-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외국인을 긴급히 보호하면 즉시 긴급보호서를 작성하여 그 외국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외국인을 보호한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에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 외국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56조의4(강제력의 행사)

-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피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피보호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고, 다른 피보호자와 격리하여 보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보호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도주의 방지, 시설의 보안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 1. 자살 또는 자해행위를 하려는 경우
 -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는 경우
 - 3. 도주하거나 도주하려는 경우
 - 4.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보호시설 및 피보호자의 안전과 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강제력을 행사할 때에는 신체적인 유형력(有形力)을 행사하거나 경찰봉, 가스분사용총, 전자충격기 등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안장비만을 사용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강제력을 행사하려면 사전에 해당 피보호자에게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으로 사전에 경고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보호시설의 질서유지 또는 강제퇴거를 위한 호송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 1. 수갑
 - 2. 포승
 - 3. 머리보호장비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시설의 질서유지 또는 강제퇴거를 위한 호송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호장비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것
 - ⑤ 제4항에 따른 보호장비의 사용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65조(보호의 일시해제)

- 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직권으로 또는 피보호자(그의 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등을 포함한다)의 청구에 따라 피보호자의 정상(情狀), 해제요청사유, 자산,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2천만원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시키고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보호를 일시

해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 청구, 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의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보호 일시해제의 취소)

- 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보호로부터 일시해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호의 일시해제를 취소하고 다시 보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시해제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 ②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의 일시해제를 취소하는 경우 보호 일시해제 취소서를 발급하고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의 국고 귀속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의2(보호의 일시해제 절차 등의 게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 및 그 취소에 관한 절차를 보호시설 안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9조(보호의 일시해제)

- ①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보호의 일시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보호명령서 또는 강제퇴거명령서

의 집행으로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사람(이하 “피보호자”라 한다), 피보호자의 보증인 또는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인등에게 보증금 납부능력을 소명하는 자료 등 보호의 일시해제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보호의 일시해제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보호 일시해제 청구서에 청구의 사유 및 보증금 납부능력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직권으로 또는 제2항에 따른 청구를 받아 보호의 일시해제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관계 서류를 심사하여 주문·이유 및 적용 법조문 등을 적은 보호 일시해제 결정서를 피보호자(그의 보증인 또는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인등을 포함한다)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경우에 보호를 일시해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서에 보호해제기간, 보증금의 액수·납부일시 및 장소, 주거의 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건 외에 보증금을 내면 보호를 일시해제하며, 조건을 위반하면 보호의 일시해제를 취소하고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8. 9. 18.>
- ⑤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보호를 일시해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용의자가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을 때에는 보호해제기간을 분명히 밝힌 보호해제 의뢰서를 보호시설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8. 5. 8., 2018. 9. 18.>
- ⑥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보증금 예치 절차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 9. 18.>
- ⑦ 제6항에 따라 예치된 보증금은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국고 귀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외국인이 출국하거나 보호 일시해제를 취소하는 때

에 보증금을 낸 사람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18.>

제79조의2(보호 일시해제 심사기준)

- ①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또는 청구에 따라 보호의 일시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8., 2018. 9. 18.>
1. 피보호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협이나 회복할 수 없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2. 국가안전보장·사회질서·공중보건 등의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3. 피보호자의 범법사실·연령·품성, 조사과정 및 보호시설에서의 생활태도
 4. 도주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5. 그 밖에 중대한 인도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
- ② 제1항에 따른 보호 일시해제의 세부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80조(보호 일시해제의 취소)

- ①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보호 일시해제 취소서를 발급할 때에는 그 취소서에 취소 사유, 보호할 장소 등을 적어 피보호자(그의 보증인 또는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인등을 포함한다)에게 교부하고, 지체 없이 그 용의자를 다시 보호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8., 2018. 9. 18.>
- ②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보증금의 국고귀속 절차에 관하여는 제17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